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상업지역안의"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로 한다.

제6조 제1호중 "지정벽보판"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삽입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14조 제2항중 "매년 2월말까지"를 "매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제5항중 "1월말까지"를 "2월말까지"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제2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로 한다.

[별표2]중 제3호 돌출간판 및 제7호 애드벌룬의 기준란과 지역별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호 플래카드란을 삭제한다.

3. 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15,000	10,000
		3.5제곱미터 초과	20,000	12,000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4,000	3,000
7. 애드벌룬	개	공중에 띄우는 것	15,000	10,000
		옥상에 표시하는 것	20,000	15,000

[별표5]중 제4호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설정"을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간판 규격의 설정"으로 하며, 동호근거법령란의 "제20조
제1항"을 "제19조 제7항 및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